

[별표 8] <신설 2011.10.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p>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p>라) 연면적 3㎡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p>라) 연면적 3㎡ 이상</p> <p>나. 현수막</p> <p>1) 벽면 이용 현수막의 경우</p> <p>가) 면적 3㎡ 미만</p> <p>나) 면적 3㎡ 이상 5㎡ 미만</p> <p>다) 면적 5㎡ 이상 10㎡ 미만</p> <p>라) 면적 10㎡ 이상</p> <p>2)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p> <p>가) 면적 3㎡ 미만</p> <p>나) 면적 3㎡ 이상 5㎡ 미만</p> <p>다) 면적 5㎡ 이상 10㎡ 미만</p> <p>라) 면적 10㎡ 이상</p>	<p>법 제20조제1항제1호</p>	<p>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p> <p>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p> <p>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p> <p>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p> <p>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p> <p>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p> <p>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p> <p>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p> <p>80만원+면적 10㎡ 초과하</p>

<p>3)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p> <p>다. 벽보</p> <p>라. 전단</p>		<p>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초과</p> <p>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p> <p>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p>
<p>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p> <p>가. 30일 이상 90일 미만</p> <p>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p> <p>다. 180일 이상 1년 미만</p> <p>라. 1년 이상</p>	<p>법 제20조제1항제2호</p>	<p>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p> <p>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p> <p>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p> <p>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p>
<p>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p> <p>가. 연 1회 위반한 경우</p> <p>나. 연 2회 위반한 경우</p> <p>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p>	<p>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p>	<p>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p> <p>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p> <p>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p>
<p>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p> <p>가. 연 1회 위반한 경우</p> <p>나. 연 2회 위반한 경우</p> <p>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p>	<p>법 제20조제1항제5호</p>	<p>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p> <p>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p> <p>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p>
<p>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p> <p>가. 1회 위반한 경우</p>	<p>법 제20조제2항</p>	<p>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p>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